

공 고 문

법무부공고 제2026 - 262호

제17회 법조윤리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

2026년도 시행 제17회 법조윤리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0일

법무부장관

1. 시험일자: 2026년 8월 1일(토)

2.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

시 험 시 간	시 험 과 목	입 실 시 간
11:00~12:10 (70분)	법 조 윤 리	10:20까 지 ※ 시험실 개방 : 08:40

3. 시험장소

응시표 좌석번호	시 험 장 소	
	시 험 장	소 재 지
고려대 우당교양관 001 ~고려대 우당교양관 381	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	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
성균관대 퇴계인문관 001 ~성균관대 퇴계인문관 276	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	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-2
연세대 광복관 001 ~연세대 광복관 238	연세대학교 광복관	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
중앙대 103관 001 ~중앙대 103관 272	중앙대학교 103관	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
한양대 제1공학관 001 ~한양대 제1공학관 311	한양대학교 제1공학관	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
부산대 제1법학관 001 ~부산대 제1법학관 194	부산대학교 제1법학관	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
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~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82	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	대구시 북구 대학로 80
전남대 진리관 001 ~전남대 진리관 109	전남대학교 진리관	광주시 북구 용봉로 77
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001 ~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174	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	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
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~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26	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	제주시 제주대학로 102

※ 시험장소 확인 방법: 2026. 7. 10.(금) 09:00~7. 31.(금)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 (<http://moj.uwayapply.com>)를 통해 응시표 출력 → **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**

예) 좌석번호란에 '고려대 우당교양관 063'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(앞장 참조)이며,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'응시자 시험실 배치표'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,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.

☞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(단,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),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.

4. 응시자준수사항

가.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

○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
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경우 여권정보 증명서도 필요)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국가보훈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 등

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※ 신분증 미지참자는 개인정보(인적사항, 지문정보 등)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신분 확인을 위해 법무부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. 불참 시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.

※ 시험 중 전자·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○ 시험실에는 쏟아질 우려가 있는 뚜껑 없는 음료(예: 원터치 캔음료, 1회용 커피 음료 등) 반입이 금지되며, 시험실 내에서 음료 이외의 취식을 금합니다.

○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(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),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
※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,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.

○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,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
○ 응시표(뒷면 포함)에는 출력된 내용 외의 밑줄,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 행위도 금합니다.

-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, 신분증,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(책, 휴대폰 등)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.
- 답안지가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, 기타 소지품(책 등)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,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장 내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.
-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관은 응시자의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, 응시자가 해당 검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지정된 시간(시험 시작 5분 전)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,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답안지에 수험번호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.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,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.
-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.

나. 시험시간 중

-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, 신분증, 필기구,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(포스트잇 종류, 메모지, 칼, 가위, 독서대 등)을 소지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중 휴대폰, 스마트안경, 스마트워치,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(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).
- 시험 시간 중에는 응시자 간 컴퓨터용 사인펜, 수정테이프 등의 필기구를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.
- 시험관리관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시 응시자에게 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.
- 소음·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, 이에 따라야 합니다.

- 시험관리관은 필요시 시험 중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민·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도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
다. 답안지 작성 시

-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'●'형태로 표기하여야 하며,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.
- 답안지는 반드시 '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'(사인펜에 '컴퓨터용'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)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※ 지정된 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-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. 단,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,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라. 시험 종료 시

-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고, 이를 위반하여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.
- 시험시간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인 경우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교체한 후, 새로 작성 중인 답안지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즉시 회수됩니다.
-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회수된 답안지가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.

마. 기 타

- 「변호사시험법」 제6조에 따른 응시결격자, 제7조에 따른 응시제한자 및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

5.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

가. 부정행위자

변호사시험법 제17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

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1.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
2.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(부정행위)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2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
3.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

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(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)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.

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(응시자준수사항) 법 제17조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
2.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
3.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,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
4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
5.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
6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